

국가철도공단 개방형직위(철도혁신연구원장) 모집 공고

국가철도공단에서 전문역량을 필요로 하는 개방형직위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.

2024. 4. 3.

국가철도공단 이사장

1. 모집예정 직위 및 인원

모집예정 직위	임용신분	인원(명)	근무 예정지
철도혁신연구원장	계약직 1급	1	본사 (대전광역시 동구)

2. 주요 수행업무

직위	주요 수행업무
철도혁신 연구원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연구개발 실용화 계획수립 및 관리시설·시스템분야 국가 R&D 사업과제 및 위탁연구과제 수행IT융합 철도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계획수립 및 구축AI,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 발굴, 연계 및 관리기타 사내 ERP시스템, 철도산업정보 시스템, 정보보안 관련 등

3. 임용기간

- 최초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의 범위로 하되,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추가로 3년 까지 연 단위로 연장계약 가능

4. 응시자격요건 별지 참조

-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2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경력 및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

5. 보수수준 : 공단 연봉제 보수규정 준용

6. 제출서류

○ 응시원서(컬러사진 부착) * 이메일 제출시 사진파일 삽입

○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
○ 이력서 1부(자기소개서는 A4용지 3매 이내)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(A4용지 5매 이내)

○ 최종학력증명서, 경력증명서,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

○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

※ 심사기준 및 제출서류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(<http://www.kr.or.kr>)를 참조하시고,
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철도공단 인재개발처 인사부(042-607-3647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
7. 접수기간 및 장소

○ 접수기간 : 2024. 4. 8.(월) 09:00 ~ 2024. 4. 15.(월) 18:00까지

○ 접수장소 : (34618)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

국가철도공단 경영본부 인재개발처 인사부(24층)

○ 접수방법 : 방문접수(토·일요일, 공휴일은 접수 불가),

등기우편 또는 이메일(kr_recruit@kr.or.kr)접수

*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, 이메일 제출 시 정상 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 필수

*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형식으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

8. 전형방법 : 전형단계별 합격자에게 일시 및 장소 개별통보

① 서류전형 : 제출된 서류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임용자격요건 심사

② 면접시험 :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성 심사

※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단계 응시자격 부여하고 각 단계별
득점은 합산되지 않음

9. 기타사항

○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 결격사유에
해당하는 때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⇒ 주요경력란 기재 시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반드시 첨부

-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거나,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.
- 경력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과 발급담당자의 날인(연락처 포함)이 있어야 합니다.
- 공고문에 제시된 일정은 공단 사정에 따라 공지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.
- 임용 후에도 우리공단 규정상 결격사유(신원조회 결과 부적격자 등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'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' 제11조제4항에 따라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.
- ※ 채용관련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30일간 보관하며, 이 기간 동안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가 없을 시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 합니다.

[별지]

응시자격 및 결격사유

□ **응시자격요건**

○ **경력 및 자격요건** : 경력 및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응시가능

-
-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일반직 4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
 -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직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
 - 박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, 공공기관, 민간기관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이면서, SOC분야 관련 근무·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자
 - 석사학위 소지자로 공무원, 공공기관, 민간기관 근무경력이 12년 이상이면서, SOC분야 관련 근무·연구경력이 6년 이상인자
-

□ **임용 결격사유** : 공단 인사규정 제12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는 자

제12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 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7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8. 병역법에 의한 병역(징병검사, 징집·소집, 입영, 군복무 등)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자
 9.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 1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 12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